

## 제 11 장 정부조달

### 제 11.1 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건설·운영·이전 방식 계약 및 공공사업 실시 계약**이란 물리적 기간시설, 공장, 건물, 설비 또는 그 밖의 정부소유 사업의 신축 또는 재건을 규정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여, 계약적 약정을 공급자가 이행하는 대가로서 조달기관이 공급자에게 계약기간 동안 사업의 임시 소유권 또는 이를 통제하고 운영하며 사용에 대한 지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지정된 기간 동안 부여하는 계약적 약정을 말한다.

**상업적 상품 또는 서비스**란 비정부적 목적을 위하여 비정부 구매자에게 일반적으로 상업 시장에서 판매되거나 판매를 위한 청약의 대상이 되고, 비정부 구매자에 의하여 관례적으로 구매되는 유형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

**건설 서비스**란 국제연합 잠정 중앙상품분류(CPC) 중분류 51 에 근거하여, 그 어떠한 수단에 의해서든 토목 또는 건축 공사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일**은 달력상의 일을 말한다.

**서면으로**란 독해 가능하고, 모사 가능하며, 사후에 통지될 수 있고 그리고 전자적으로 전송되고 저장된 정보를 포함할 수 있는 모든 문자 또는 숫자로 된 표현을 말한다.

**제한입찰**이란 조달기관이 자신이 선택한 하나 또는 복수의 공급자들과 접촉하는 조달 방법을 말한다.

**유자격자 명부**란 조달기관이 그 명부에 등재하기 위한 조건을 충족시킨다고 결정하여 그 조달기관이 두 번 이상 활용하려는 공급자들의 명부를 말한다.

조달예정공고란 조달기관이 관심 있는 공급자에게 참가신청서, 입찰서, 또는 둘 모두를 제출할 것을 청하기 위하여 공표하는 공고를 말한다.

대응구매란 국산 재료의 사용, 기술 면허, 투자, 대응 무역 및 이와 유사한 행위 또는 요건과 같이 국내 개발을 장려하거나 당사국의 국제수지계정을 개선하는 모든 조건 또는 약속을 말한다.

공개입찰이란 모든 관심 있는 공급자가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는 조달 방법을 말한다.

조달기관이란 부속서 11-가(정부조달 양허표)에 열거된 기관을 말한다.

적격 공급자란 조달기관이 참가조건을 충족시킨다고 인정하는 공급자를 말한다.

선택입찰이란 조달기관이 적격 공급자들에 한정하여 입찰서 제출을 청하는 조달방법을 말한다.

서비스는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건설서비스를 포함한다.

공급자란 조달기관에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인 또는 인의 집단을 말한다. 그리고

기술규격이란 다음의 입찰 요건을 말한다.

- 가. 품질, 성능, 안전도 및 용적을 포함한 조달될 상품 또는 서비스의 특성 또는 그 상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이나 공급을 위한 과정 및 방법을 규정한 것, 또는
- 나. 상품 또는 서비스에 적용되는 용어, 기호, 포장, 표시 또는 라벨링 요건을 다루는 것

## 제 11.2 조

### 적용범위

#### 협정의 적용

1. 이 장은 적용대상조달에 관한 모든 조치에 적용된다.

2. 이 장의 목적상, 적용대상조달이란 다음의 정부조달을 말한다.

가. 상품, 서비스 또는 그 조합의 것

1) 부속서 11-가(정부조달 양허표)의 각 당사국의 양허표에 명시된 것,  
그리고

2) 상업적 판매 또는 재판매를 목적으로 조달하지 않거나, 상업적 판매  
또는 재판매를 위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이나 공급에 사용하기 위  
하여 조달하지 않는 것

나. 구매, 매입 선택권을 갖거나 갖지 않는 임차 또는 리스, 건설·운영·이전 방  
식 계약 및 공공사업 실시 계약을 포함한 모든 계약 수단에 의한 것

다. 제 9 항부터 제 11 항까지에 따라 추정된 조달금액이 조달예정공고의 공표 당  
시 부속서 11-가(정부조달 양허표)의 당사국의 양허표에 명시된 관련 기준  
가와 같거나 초과하는 금액의 것

라. 조달기관에 의한 것, 그리고

마. 이 협정의 적용범위로부터 달리 배제되지 않는 것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활동*

3. 부속서 11-가(정부조달 양허표)의 당사국의 양허표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이 장  
은 다음에 적용되지 않는다.

가. 토지, 기존 건물 또는 그 밖의 부동산, 또는 이들에 대한 권리의 취득 또는 임  
차

- 나. 비계약적 합의 또는 협력협정, 무상교부, 용자, 지분참여, 보증, 보조금, 재정적 유인 및 후원 약정을 포함하여, 당사국(조달기관을 포함한다)이 제공하는 모든 형태의 지원
- 다. 재무 대리 또는 예탁 서비스, 규제되는 금융기관의 청산 및 관리 서비스, 또는 용자 및 정부채권, 어음 및 그 밖의 유가증권을 포함한 공적 부채의 판매, 상환 및 배분과 관련된 서비스의 조달 또는 취득
- 라. 공공고용계약
- 마. 다음과 같이 수행되는 조달
  - 1) 개발원조를 포함하여 국제지원을 제공하는 특정 목적을 위하여 수행되는 조달
  - 2) 국제기구에 의하여 또는 외국의 또는 국제적 공여, 차관 또는 그 밖의 지원으로 자금이 충당되는 것으로서, 국제기구 또는 공여자의 조달 절차 또는 조건이 적용되는 것. 국제기구 또는 공여자의 절차 또는 조건이 공급자의 참여를 제한하지 않는 경우, 그 조달은 제 11.5 조제 1 항을 따른다. 또는
  - 3) 군대 주둔과 관련되거나 사업 서명국의 공동 이행과 관련된 국제 협정의 특정 절차 또는 조건 하에서 수행되는 것

#### 양허표

4. 각 당사국은 부속서 11-가(정부조달 양허표)의 자국 양허표에 다음의 정보를 명시한다.

- 가 제 1 절에는 조달이 이 장의 적용을 받는 중앙정부기관
- 나. 제 2 절에는 이 장의 적용을 받는 상품

다. 제 3 절에는 건설서비스를 제외한 이 장의 적용을 받는 서비스

라. 제 4 절에는 이 장의 적용을 받는 건설서비스

마. 제 5 절에는 일반 주해

바. 제 6 절에는 모든 조달 특혜

사. 제 7 절에는 기준가 조정, 그리고

아. 제 8 절에는 조달 정보

5. 적용대상조달의 맥락에서 조달기관이 제1절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인에게 특정 요건에 따라 조달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제11.5조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그러한 요건에 적용된다.

#### 준수

6. 각 당사국은 적용대상조달의 수행에서 자국의 조달기관이 이 장을 준수하도록 보장한다.

7. 어떠한 조달 기관도 이 장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조달의 어떠한 단계에서든 조달을 준비 또는 설계하거나 달리 구성하거나 별개의 조달로 나누지 않으며, 또는 조달가액 추산을 위한 특정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

8.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조달기관을 포함한다)이 새로운 조달 정책, 절차 또는 계약 수단을 개발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다만, 이는 이 장과 불합치 않아야 한다.

#### 가액산정

9. 적용대상조달인지 여부를 명확히 할 목적으로 조달가액을 추산할 때, 조달기관은 다음을 고려하여 조달의 전체 기간에 걸친 추정 최대 총 조달가액을 포함한다.

가. 그 계약에 따라 규정될 수 있는 할증료, 요금, 수수료, 이자 또는 그 밖의 수입 흐름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보수

나. 선택 조항의 가액, 그리고

다. 동일한 조달에 따라 동시에 또는 주어진 기간 동안 하나 이상의 공급자에게 낙찰되는 계약

10. 조달의 개별적인 요건이 두 건 이상의 낙찰이나 낙찰의 분할로 귀결되는 경우(이하 “반복계약”이라 한다), 추정 최대 총 가액의 산정은 다음에 근거한다.

가. 조달의 전체 기간에 걸친 총 최대 조달가액

나. 직전 12개월 또는 조달기관의 직전 회계연도 동안 낙찰된 동일한 유형의 상품 또는 서비스의 반복계약의 가액으로서, 가능한 경우, 다음 12개월에 걸쳐 조달될 상품 또는 서비스의 수량 또는 가액의 예상되는 변동을 고려하여 조정할 것, 또는

다. 최초 낙찰 후 12개월 또는 조달기관의 회계연도 동안 낙찰될 동일한 유형의 상품 또는 서비스의 반복계약의 추정가액

11. 이 협정에 따라 달리 제외되지 않는 한, 조달의 전체 기간에 걸친 추정 최대 총 조달가액이 알려지지 않은 경우, 그 조달은 적용대상조달로 간주된다.

### 제 11.3 조

#### 일반 규정

양 당사국은 양국의 공급자를 위한 특히, 경쟁 기회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무역관계에서의 정부조달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양국 정부조달 시장의 효과적이고 호혜적이며 점진적인 개방을 양국의 목적으로 정한다.

## 제 11.4 조

### 예외

1. 조치가 동일한 조건하에 있는 양 당사국 간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의 수단을 구성하게 되거나 양 당사국 간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게 될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요건을 조건으로,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조달기관을 포함한다)이 다음의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가. 공중도덕, 질서 또는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나.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다. 지식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또는

라. 장애인, 자선단체 또는 비영리단체, 또는 재소자 노동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되는 조치

2.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무기, 탄약 또는 전쟁물자의 조달이나 국가안보 또는 국방목적에 불가결한 조달과 관련된 자국의 필수적인 안보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여기는 조치를 하거나 그러하다고 여기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 제 11.5 조

### 일반원칙

#### 내국민 대우 및 비차별

1. 적용대상조달에 관한 모든 조치에 대하여, 각 당사국(조달기관을 포함한다)은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 및 서비스와 다른 쪽 당사국의 공급자에게 그 당사국(조달기관을 포함한

다)이 국내 상품, 서비스 및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즉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부여한다.

2. 적용대상조달에 관한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당사국(조달기관을 포함한다)도

가. 다른 쪽 당사국의 인과의 제휴 또는 다른 쪽 당사국의 인의 소유의 정도를 근거로, 국내에 설립된 한 공급자를 국내에 설립된 다른 공급자보다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는다. 또는

나. 국내에 설립된 공급자가 특정한 조달을 위하여 제공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가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 또는 서비스라는 점에 근거하여 그 공급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3. 적용대상조달을 위하여 낙찰된 계약에 따른 모든 주문은 제 1 항 및 제 2 항의 적용대상이 된다.

#### 조달 방법

4. 조달기관은 제 11.9 조 또는 제 11.10 조가 적용되지 않는 한, 적용대상조달을 위하여 공개입찰 절차를 이용한다.

5. 조달기관은 적용대상조달을 다음과 같이 투명하고 공평한 방식으로 수행한다.

가, 공개입찰, 선택입찰 및 제한입찰과 같은 방법을 이용하는 이 장에 합치하는 방식

나. 이해 상충을 피하는 방식, 그리고

다, 부패 관행을 방지하는 방식

#### 원산지 규정



6. 적용대상조달의 목적상,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 수입하거나 공급받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하여, 자국이 이와 동시에 통상적인 무역과정에서 같은 당사국으로부터 수입하거나 공급받는 같은 상품이나 서비스에 적용하는 원산지 규정과 다른 원산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조달에 특정되지 않는 조치

7. 제 1 항 및 제 2 항은 관세 및 수입에 부과되거나 이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모든 종류의 부과금, 그러한 관세 및 부과금을 부과하는 방법, 그 밖의 수입규정 또는 절차, 그리고 적용대상조달을 규율하는 조치 외의 서비스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적용되지 않는다.

#### 전자적 수단의 이용

8. 양 당사국은 조달 정보, 공고 및 입찰서류의 공표, 입찰의 접수 그리고 일반적으로 조달에서 지급까지의 전 주기를 포함하여 적용대상조달이 전자적 수단으로 수행될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9. 전자적 수단으로 적용대상조달을 수행하는 때에, 조달기관은

가. 정보의 인증 및 암호화와 관련한 것을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이용 가능하고, 그 밖의 일반적으로 이용 가능한 금융 시스템, 정보기술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와 상호운용이 가능한 금융 시스템, 정보기술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조달이 수행되도록 보장한다. 그리고

나. 참가신청 및 입찰을 포함하여, 공급자가 제공한 정보의 무결성을 보장하는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유지한다.

#### 대응구매

10. 적용대상조달에 대하여, 당사국(조달기관을 포함한다)은 부속서 11-가(정부조달 양허표)에 포함된 자국 양허표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대응구매를 모색, 고려, 부과 또는 시행하지 않는다.

**제 11.6 조**  
**조달 정보의 공표**

1. 각 당사국은 적용대상조달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조치와 이 정보의 모든 변경이나 추가를 신속하게 공표한다.
2. 각 당사국은 그 당사국이 제 1 항에 기술된 정보와 제 11.7 조 및 제 11.9 조제 4 항에서 요구되는 공고를 공표하는 종이 또는 전자적 수단을 부속서 11-가(정부조달 양허표)의 자국 양허표의 제 8 절에 기재한다.
3. 각 당사국은 요청에 따라 제 1 항에 언급된 정보에 관련된 문의에 대한 응답으로 설명을 제공한다.

**제 11.7 조**  
**조달예정공고**

1. 각 적용대상조달에 대하여, 조달기관은 제 11.10 조에 기술된 상황을 제외하고, 부속서 11-가(정부조달 양허표)에 기재된 적절한 종이 또는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조달예정 공고를 공표한다. 공고는 최소한 공고에 응답하기 위한 기간의 만료 또는 입찰서 제출 마감시 한까지 대중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유지된다.
2. 각 당사국은 적용대상조달에 대하여, 부속서 11-가(정부조달 양허표)에 포함된 자국 양허표 제 1 절에 규정된 자국의 조달기관이 인터넷 또는 비슷한 망을 통하여 무료로 접근 가능한 전자적 공표에 대한 단일 창구에 조달예정공고를 공표하도록 보장한다.
3. 이 장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의 정보가 조달예정공고와 동시에 모든 관심 있는 공급자에게 무료로 이용 가능한 입찰 서류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조달예정공고는 다음의 정보를 포함한다.

- 가. 조달 기관의 명칭 및 주소와 그 조달 기관에 접촉하고 조달과 관련된 모든 관련 서류를 획득하는 데 필요한 그 밖의 정보, 그리고 관련 서류를 획득하기 위한 비용과 지불조건이 있다면 그 비용과 지불조건
- 나. 적절한 경우, 조달될 상품 또는 서비스의 성격 및 수량 그리고 선택 사항에 대한 기술, 또는 수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추정 수량을 포함하는 조달에 대한 설명
- 다. 적용 가능한 경우, 상품 또는 서비스의 인도 기간 또는 계약 기간
- 라. 적용 가능한 경우, 조달 참가 신청서 제출 주소 및 마감일
- 마. 입찰서 제출 주소 및 마감일
- 바. 조달기관이 속한 당사국의 공식 언어 외의 언어로 입찰서 또는 참가 신청서가 제출될 수 있는 경우, 그것들이 제출될 수 있는 하나 또는 복수의 해당 언어
- 사. 공급자가 제공해야 하는 특정 서류 또는 증명서에 대한 모든 관련 요건을 포함할 수 있는 공급자의 참가를 위한 모든 조건의 목록 및 간단한 설명
- 아. 조달기관이 제 11.9 조에 따라 입찰 참가를 청하는 대상으로 제한된 숫자의 적격 공급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선정하는 데 사용될 기준과, 적용 가능한 경우, 입찰 참가가 허용될 공급자 수에 대한 모든 제한, 그리고
- 자. 조달이 이 장의 적용을 받는다는 사실의 적시

#### 조달계획공고

- 4. 조달기관은 조달의 대상 및 조달예정공고의 공표 계획일자를 포함해야 할 향후 조달 계획에 관한 공고(이하 "조달계획공고"라 한다)를 매 회계연도마다 가능한 한 조기에 공표하도록 장려된다.

## 제 11.8 조 참가조건

1. 조달기관은 적용대상조달의 참가조건을 공급자가 그 조달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법적 및 재정적 역량과 상업적 및 기술적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인 것으로 한정한다.

2. 참가조건을 설정할 때, 조달기관은

(a) 공급자가 조달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그 공급자가 해당 당사국의 조달기관에 의하여 하나 이상의 계약을 종전에 낙찰받은 적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나, 그 공급자가 그 당사국의 영역에서 사전 작업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부과하지 않는다. 그리고

(b) 조달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경우에는 이전의 관련 실적을 요구할 수 있다.

3. 공급자가 참가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평가할 때, 조달기관은

가. 조달기관이 속한 당사국의 영역 안과 밖 모두에서의 공급자의 영업활동에 기초하여 그 공급자의 재정적 역량, 상업적 및 기술적 능력, 규제 준수 관행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행을 평가한다.<sup>1</sup> 그리고

나. 조달기관이 사전에 공고 또는 입찰 서류에 명시한 조건에만 근거하여 평가한다.

4.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는 경우, 당사국(조달기관을 포함한다)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공급자를 배제할 수 있다.

가. 파산 또는 지급불능

---

<sup>1</sup>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공급자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책임이 있고 조달기관은 공급자가 제공한 정보에 합리적으로 의존할 수 있다.

- 나. 허위 신고
- 다. 이전의 하나 또는 복수의 계약상의 실질적인 요건 또는 의무를 이행하는 데 중대하거나 지속적인 흠결
- 라. 중대한 범죄 또는 그 밖의 중대한 위반행위에 관한 최종 판결
- 마. 공급자의 상업상 무결성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반영되는 업무상 부정 행위 또는 작위나 부작위, 또는
- 바. 세금 미납

## 제 11.9 조 공급자 자격심사

### 등록제도와 자격심사 절차

1. 당사국(조달기관을 포함한다)은 관심 있는 공급자가 등록하고 특정 정보와 문서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공급자 등록제도를 유지할 수 있다.
2. 각 당사국은 다음을 보장한다.
  - 가. 조달기관이 그들의 자격심사 절차들 사이의 차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 그리고
  - 나. 조달기관이 등록제도를 유지하는 경우, 조달기관이 그들의 등록제도들 사이의 차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
3. 어떠한 당사국(조달기관을 포함한다)도

- 가. 자국의 조달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공급자가 참가하는 것에 대하여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목적으로 또는 그러한 효과를 갖도록 등록제도 또는 자격심사 절차를 채택하거나 적용하지 않는다. 또는
- 나. 다른 쪽 당사국의 공급자가 공급자 명부에 등재되는 것을 금지 또는 지연하거나 그러한 공급자가 특정 조달에 고려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등록제도나 자격심사 절차를 이용하지 않는다.

### 선택입찰

- 4. 조달기관이 선택입찰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조달기관은
  - 가. 적격 공급자에게 적용대상조달에 대한 참가 신청을 제출하도록 청하는 조달 예정공고를 공표한다. 그리고
  - 나. 조달예정공고에 제11.7조제3항 가호, 나호, 라호 및 사호부터 자호까지에 명시된 정보를 포함한다.
  
- 5. 조달기관은
  - 가. 관심 있는 공급자가 조달에 대한 참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조달에 대한 공고를 충분히 사전에 공표한다.
  - 나. 조달기관이 제 11.14 조제 3 항나호에 명시된 바에 따라 통보하는 적격 공급자에게 최소한 제 11.7 조제 3 항 다호, 마호 및 바호의 정보를 입찰기간이 시작될 때까지 제공한다. 그리고
  - 다. 조달기관이 조달예정공고에 입찰에 허용될 공급자 수의 제한 및 제한된 숫자의 공급자를 선정하는 기준 또는 정당한 이유를 기술하지 않는 한, 모든 적격 공급자가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허용한다.

6. 입찰서류가 제 4 항에 언급된 공고의 공표일부터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게 되지 않은 경우, 조달기관은 제 5 항다호에 따라 선정된 모든 적격 공급자에게 입찰서류가 동시에 이용 가능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 유자격자 명부

7. 당사국(조달기관을 포함한다)이 관심 있는 공급자들에게 유자격자 명부에의 등재를 신청하도록 청하는 공고를 매년 발행하거나, 달리 전자적 형태로 지속적으로 이용 가능하게 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유자격자 명부를 설립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그 공고는 다음을 포함한다.

- 가. 유자격자 명부가 사용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 또는 이들의 범주에 대한 설명
- 나. 유자격자 명부에 등재하기 위하여 공급자들이 충족해야 할 참가조건과 조달기관 또는 그 밖의 정부기관이 공급자의 그러한 조건 충족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용할 방법
- 다. 조달기관 또는 그 밖의 정부기관의 명칭 및 주소와 그 조달기관에 접촉하고 유자격자 명부와 관련된 모든 관련 서류를 획득하는 데 필요한 그 밖의 정보
- 라. 유자격자 명부의 유효기간 및 이를 갱신하거나 종료시키기 위한 수단, 또는 유효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유자격자 명부 사용의 종료를 통보할 방법의 적시
- 마. 적용 가능한 경우, 유자격자 명부 등재를 위한 신청서의 제출 마감시한, 그리고
- 바. 유자격자 명부가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조달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적시. 다만, 그러한 적시가 제 11.6 조제 2 항에 따라 공표된 정보를 통하여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지 않아야 한다.

8. 유자격자 명부를 설립하거나 유지하는 당사국(조달기관을 포함한다)은 제 7 항에 언급된 공고에 규정된 참가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공급자를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 명부에 포함시킨다.

9. 제 7 항에도 불구하고, 유자격자 명부가 3 년 이하 동안 유효하게 될 경우, 조달기관은 제 7 항에 언급된 공고를 그 명부의 유효기간이 시작될 때 한 번만 공표할 수 있다. 다만, 그 공고는

가. 유효기간을 명시하고 추가 공고는 공표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 그리고

나. 전자적 수단으로 공표되고 유효기간 동안 계속해서 이용 가능해야 한다.

10. 조달기관은 공급자가 유자격자 명부에의 등재를 신청하도록 허용하고, 합리적으로 짧은 시간 내에 모든 적격 공급자를 그 명부에 포함시킨다.

11. 유자격자 명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공급자가 유자격자 명부에 근거한 조달에의 참가 신청서 및 요구되는 모든 서류를 제 11.14 조제 2 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제출하는 경우, 조달기관은 그 신청서를 검토한다. 조달기관은 조달의 복잡함 때문에 신청에 대한 검토를 입찰서 제출이 허용되는 기간 내에 마치지 못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을 검토할 시간이 불충분하다는 사유로 그 공급자를 그 조달과 관련하여 고려 대상에서 배제하지 않는다.

#### *조달기관 결정에 관한 정보*

12. 당사국의 조달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은 조달 참가 신청서 또는 유자격자 명부에 등재되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는 공급자에게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을 신속하게 알린다.

13. 당사국의 조달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이 공급자의 조달 참가 신청 또는 유자격자 명부 등재 신청을 거부하거나, 공급자가 적격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중지하거나, 공급자를 유자격자 명부에서 삭제하는 경우, 그 기관은 그 공급자에게 신속하게 알리고, 그 공급자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결정 이유에 대한 서면 설명을 그 공급자에게 신속하게 제공한다.



## 제 11.10 조

### 제한입찰

1. 제 2 항을 조건으로 그리고 공급자 간 경쟁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또는 국내 공급자를 보호하거나 다른 쪽 당사국의 공급자를 차별하기 위한 방식으로 이 규정을 이용하지 않는 한, 조달기관은 제한입찰을 이용할 수 있다.

2. 조달기관이 제한입찰을 이용하는 경우, 조달의 성격에 따라 제 11.7 조부터 제 11.9 조까지 및 제 11.11 조부터 제 11.15 조까지를 적용하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다. 조달기관은 다음의 상황에서만 제한입찰을 이용할 수 있다.

가. 사전 공고, 참가 요청 또는 입찰 요청에 대하여

- 1) 입찰서가 한 건도 제출되지 않았거나 입찰참가를 신청하는 공급자가 없는 경우
- 2) 입찰서류상 필수적 요건에 부합하는 입찰서가 한 건도 제출되지 않은 경우
- 3) 입찰 참가조건을 충족하는 공급자가 없는 경우, 또는
- 4) 제출된 입찰서가 담합에 의한 것일 경우

다만, 조달기관이 공고 또는 입찰서류에 규정된 필수적인 요건을 실질적으로 수정하지 않아야 한다.

나. 상품 또는 서비스가 특정 공급자에 의해서만 공급될 수 있고 다음의 이유로 합리적인 대안 또는 대체 상품 또는 서비스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 1) 요건이 예술 작품에 대한 것인 경우

2) 특허, 저작권 또는 그 밖의 배타적인 권리의 보호, 또는

3) 기술적인 이유로 경쟁 부재에 기인하는 경우

다. 최초 조달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상품 또는 서비스를 원 공급자 또는 그의 인증 받은 대리인이 추가적으로 인도하는 경우로서, 그러한 추가적인 상품 또는 서비스를 위한 공급자 변경이

1) 최초 조달에 따라 조달된 기존의 장비, 소프트웨어, 서비스 또는 설비와의 상호호환성 또는 상호운용성 요건과 같은 기술적 이유로 또는 원 공급자의 보증에 따른 조건으로 인하여 가능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2) 조달기관에 중대한 불편 또는 상당한 비용 중복을 초래할 경우

라. 원자재 시장 또는 거래소에서 구매되는 상품의 경우

마. 조달기관이 조사, 실험, 연구 또는 독자 개발을 위한 특정 계약을 목적으로 그리고 그 계약과정에서 조달기관의 요청으로 한시적 이용을 위하여 의도되었거나 개발된 시제품 또는 최초 상품 또는 서비스를 조달하는 경우. 시제품이나 최초 상품 또는 서비스의 독자 개발은 현장시험 결과를 포함하고 그 시제품이나 최초 상품 또는 서비스가 수용할만한 품질 기준으로 대량 생산 또는 공급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한적 생산이나 공급을 포함할 수 있으나, 상업성을 확립하거나 연구 및 개발 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대량 생산 또는 공급은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나 새롭게 개발된 이러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그 후의 조달은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된다.

바. 기초 사업에 부합하는 유사한 서비스의 반복으로 구성된 신규 서비스의 경우로, 그 기초 사업의 최초 계약이 낙찰되었으며, 그 조달기관이 최초 서비스에 관한 조달예정공고에 그러한 신규 서비스의 계약 낙찰에는 제한입찰절차가 사용될 수 있다고 적시한 경우

사. 이례적인 처분, 청산, 파산 또는 법정관리와 같이 매우 단기간에만 발생하는 예외적으로 유리한 조건에 따라 이루어지는 구매의 경우. 다만 일반 공급자로 부터의 통상적인 구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아. 다음의 경우에 한정하여 디자인 경연대회 당선자에게 낙찰되는 계약의 경우

- 1) 경연대회가 이 장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조직된 경우, 그리고
- 2) 당선자에게 디자인 계약이 낙찰되게 할 목적으로 경연대회가 독립적인 심사인단에 의하여 관정을 받는 경우

자. 엄밀히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여, 조달기관이 예측할 수 없었던 사건의 발생으로 인한 극도로 긴급한 상황을 이유로 공개입찰 또는 선택입찰에 의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적시에 취득할 수 없는 경우

3. 제 2 항에 따라 낙찰된 각 계약에 대하여, 조달기관은 조달기관의 명칭, 조달된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액 및 종류, 그리고 제한입찰의 이용을 정당화한, 제 2 항에 기술된 상황과 조건을 적시하는 문안을 포함하는 서면 보고서를 준비하거나 기록을 유지한다.

### 제 11.11 조

#### 협상

1. 당사국은 적용대상조달의 맥락에서 다음의 경우, 자국의 조달기관이 협상을 수행하도록 규정할 수 있다.

가. 조달기관이 제 11.7 조에 따라 요구되는 조달예정공고에서 협상을 수행할 의향이 있다고 적시한 경우

나. 평가를 통하여, 조달예정공고 또는 입찰서류에 규정된 특정 평가기준에 비추어 명백하게 가장 유리한 입찰서가 없는 것으로 보일 경우

다. 조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라. 모든 입찰이 조달기관의 예산에 규정된 배정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2. 조달기관은

가. 협상에 참가하는 공급자의 탈락이 조달예정공고 또는 입찰서류에 규정된 평가기준에 따라 수행됨을 보장한다. 그리고

나. 협상이 타결된 경우, 나머지 참가 공급자에게 새로운 또는 개정된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공통적인 마감시한을 제시한다.

### 제 11.12 조

#### 기술 규격

1. 조달기관은 양 당사국 간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목적으로 또는 그러한 효과를 갖도록 기술규격을 준비, 채택 또는 적용하거나 적합성 평가절차를 규정하지 않는다.

2. 조달될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기술규격을 규정할 때, 조달기관은 적절한 경우,

가. 디자인이나 외형적 특성보다는 성능 및 기능적 요건을 기준으로 기술규격을 규정한다. 그리고

나. 국제표준이 존재하는 경우 기술 규격을 그러한 국제표준에 기초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기술규정, 인정된 국가표준 또는 건축법규에 기초한다.

3. 기술규격에 디자인이나 외형적 특성이 사용되는 경우, 조달기관은 적절한 경우 입찰서류에 “또는 동등한 것” 과 같은 문구를 포함시켜, 조달의 요건을 명백하게 충족시키는 동등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입찰서를 고려할 것임을 적시해야 할 것이다.

4. 조달기관은 조달의 요건을 충분히 정확하게 또는 명료하게 설명할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특정 상표 또는 상호, 특허, 저작권, 디자인, 형식, 특정 원산지, 생산자 또는 공급자를 요구하거나 인용하는 기술규격을 규정하지 않는다. 다만, 그렇게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달기관은 입찰서류에 “또는 동등한 것” 과 같은 문구를 포함시켜야 한다.
5. 조달기관은 특정 조달을 위한 기술규격의 준비 또는 채택에 사용될 수 있는 조언을 그 조달에 상업적 이익을 가질 수 있는 인으로부터, 경쟁을 미리 배제하는 효과를 갖게 될 방식으로 구하거나 수용하지 않는다.
6.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달기관은 특정 조달을 위한 규격을 개발할 때 시장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7.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조는 조달기관이 천연자원의 보존 또는 환경의 보호를 증진하기 위하여 기술규격을 준비, 채택 또는 적용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으로 의도된 것이 아니다.
8.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장은 당사국 또는 그 당사국의 조달기관이 그 당사국 영역 밖에서 정부의 민감한 정보의 보관, 호스팅 또는 처리에 영향을 미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규격을 포함한 그러한 정보를 보호하는데 요구되는 기술규격을 준비, 채택 또는 적용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으로 의도된 것이 아니다.

## 제 11.13 조

### 입찰서류

1. 조달기관은 관심 있는 모든 공급자에게 그 공급자가 응찰서를 준비하고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는 입찰서류를 요청에 따라 신속하게 이용 가능하도록 하거나 제공한다. 조달예정공고에 이미 규정되지 않는 한, 그러한 입찰서류는 다음에 대한 완전한 기술을 포함한다.

- 가. 조달될 상품 또는 서비스의 성격, 범위 그리고 알려진 경우에는 그 수량 또는 수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추정 수량을 포함한 그 조달 그리고 기술규격, 적

합성 인증, 계획서, 설계도 또는 사용설명서 자료를 포함한 충족시켜야 하는 모든 요건

나. 공급자가 제출하도록 요구되는 재정적 보증, 정보 및 서류를 포함한 모든 참가조건

다. 계약 낙찰시 고려될 모든 기준 및 그러한 기준의 상대적인 중요성

라. 공개 개찰이 있을 경우, 개찰 일시 및 장소, 그리고 적절한 경우 입회 권한이 있는 인물

마. 조달기관이 전자적 수단으로 조달을 수행할 경우, 인증 및 암호화 요건 또는 전자적 수단에 의한 정보의 제출과 관련된 그 밖의 요건

바. 입찰 평가와 관련된 그 밖의 모든 조건

사. 지불조건 및 서면 또는 전자적 수단과 같은 입찰서가 제출될 수 있는 수단에 대한 제한을 포함한 그 밖의 모든 조건, 그리고

아. 상품 인도 또는 서비스 공급 일자

2. 가능한 한도에서 그리고 적용 가능한 요금을 조건으로, 기관은 관련 입찰 서류를 모든 공급자가 공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전자적 수단 또는 컴퓨터 기반 통신망을 통하여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게 한다.

3. 조달기관은 조달될 상품의 인도일자 또는 서비스의 공급일자를 정할 때, 조달의 복잡성과 같은 요인을 고려한다.

4. 조달기관은 관심 있는 공급자 또는 참가하는 공급자의 관련 정보에 대한 합리적인 요청에 신속하게 답변한다. 다만, 그러한 정보가 그 공급자에게 다른 공급자보다 이점을 주어서는 안 된다.

## 수정

5. 조달기관이 계약의 낙찰 전에 조달예정공고 또는 참가한 공급자에게 제공한 입찰서류에 규정한 평가 기준 또는 요건을 수정하거나, 공고 또는 입찰서류를 개정하거나 재발행하는 경우, 그 조달기관은 그러한 수정사항 또는 개정되거나 재발행된 공고 또는 입찰서류를

- 가. 수정, 개정 또는 재발행 당시 조달에 참가 중인 모든 공급자를 조달기관이 알고 있는 경우, 그러한 모든 공급자에게 그리고 그 밖의 모든 경우에는 원래 정보를 이용 가능하게 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공표하거나 서면으로 제공한다. 그리고
- 나. 적절한 경우 그러한 공급자가 최초 입찰서를 수정하여 다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할만한 충분한 시간 내에 공표하거나 서면으로 제공한다.

## 제 11.14 조 기간

### 일반사항

1. 조달기관은 공급자가 입찰서류를 획득하고 참가신청서와 응찰서를 준비 및 제출할 수 있도록 자국의 합리적인 필요에 합치되게,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 충분한 시간을 제공한다.

- 가. 조달의 성격 및 복잡성
- 나. 예상되는 하도급 계약의 범위, 그리고
- 다. 전자적 수단이 사용되지 않는 경우 국내는 물론 국외의 지점에서 비전자적 수단으로 입찰서를 전송하는 데 필요한 시간

기간의 연장을 포함하여 그러한 기간은 모든 관심 있는 공급자 또는 참가하는 공급자에 대하여 동일하다.

### 마감시한

2. 선택입찰을 사용하는 조달기관은 참가신청서의 제출을 위한 마감일이 조달예정공고의 공표일부터 원칙적으로 25일 미만이 되지 않도록 설정한다. 조달기관에 의하여 적절하게 증명된 긴급사태로 그러한 기간이 실행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그 기간은 10일 이상이 되도록 단축될 수 있다.

3. 제 4항 및 제 5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조달기관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이 다음의 날부터 40일 이상이 되도록 설정한다.

가. 공개입찰의 경우, 조달예정공고가 공표된 날, 또는

나. 선택입찰의 경우, 조달기관이 유자격자 명부를 사용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공급자가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권유받을 것이라고 조달기관이 공급자에게 통보하는 날

4. 조달기관은 제 3항에 규정된 입찰기간을 다음의 상황 중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5일씩 단축할 수 있다.

가. 조달예정 공고가 전자적 수단으로 공표되는 경우

나. 입찰서류가 조달예정공고 공표일부터 전자적 수단으로 이용 가능하게 되는 경우, 그리고

다. 그 조달기관이 전자적 수단으로 입찰서를 접수하는 경우

5. 조달기관은 다음의 경우 제 3항에 규정된 입찰 기간을 10일 이상이 되도록 단축할 수 있다.



가. 조달기관이 제 11.7 조에 따라 조달계획 공고를 조달예정공고의 공표보다 최소 40 일 그리고 12 개월을 넘지 않을 만큼 미리 공표하였고, 그 조달계획공고가 다음을 포함하는 경우

- 1) 그 조달에 대한 설명
- 2) 입찰서 또는 참가 신청서의 대략적인 제출 마감일
- 3) 조달과 관련된 서류를 얻을 수 있는 주소, 그리고
- 4) 조달예정공고를 위하여 요구되는 이용 가능한 최대한의 정보

나. 반복계약에 대하여, 조달기관이 이 항에 근거한 입찰 기간을 차기 공고에서 제공할 것이라고 최초의 조달예정공고에서 적시하는 경우

다. 조달기관에 의하여 적절하게 증명된 긴급사태로 제 3 항에 규정된 입찰 기간이 실행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또는

라. 조달기관이 상업적 상품 또는 서비스를 조달하는 경우

6. 제 5 항과 연계하여 제 4 항의 원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제 3 항에 규정된 입찰 기간이 조달예정공고가 공표된 날부터 10 일 미만이 되도록 단축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다.

7. 조달기관은 모든 관심 있는 공급자 또는 참가하는 공급자에게 공통적인 마감시한에 따라 참가 신청 또는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이러한 기간과 이러한 기간의 연장은 모든 관심 있는 공급자 또는 참가하는 공급자에 대하여 동일하다.

## 제 11.15 조

### 입찰서의 취급 및 계약의 낙찰

입찰서의 취급

1. 조달기관은 모든 입찰서를 조달 과정의 공정성 및 공평성과 입찰서의 기밀성을 보장하는 절차에 따라 접수하고 개봉하며 취급한다.
2. 공급자의 입찰서가 입찰서 접수에 대하여 명시된 시각 후에 접수된 경우, 그 조달기관은 지연이 오로지 그 조달기관 측의 잘못된 취급 때문인 경우 그 공급자를 불리하게 하지 않는다.
3. 조달기관이 입찰서의 개찰과 계약의 낙찰 사이에 공급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형식상 오류를 정정할 기회를 주는 경우, 그 조달기관은 참가하는 모든 공급자에게 동일한 기회를 제공한다.

#### 계약의 낙찰

4. 입찰서가 낙찰 대상으로 고려되기 위해서는 서면으로 제출되고, 개찰 시 입찰서가 공고 및 입찰서류에 규정된 필수 요건을 준수하며, 참가조건을 충족시키는 공급자가 제출하는 것이어야 한다.
5. 조달기관이 계약을 낙찰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지 않는 한, 그 조달기관은, 충분히 계약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조달기관이 결정한 공급자로서 공고 및 입찰서류에 명시된 평가기준에만 근거하여 다음을 제출한 공급자에게 계약을 낙찰한다.
  - 가. 가장 유리한 입찰서, 또는
  - 나. 가격이 유일한 기준인 경우, 최저가 입찰서
6. 조달기관이 제출된 그 밖의 입찰서의 가격보다 비정상적으로 낮은 가격을 제시한 입찰서를 접수하는 경우, 그 조달기관은 그 공급자가 참가조건을 충족하는지 및 계약조건을 충족시킬 능력이 있는지를 그 공급자와 검증할 수 있다.
7. 조달기관은 이 장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선택사항을 사용하거나, 적용대상조달을 취소하거나 낙찰된 계약을 수정 또는 해지하지 않는다.

**제 11.16 조**  
**투명성과 낙찰 후 정보**

*공급자에게 제공되는 정보*

1. 조달기관은 입찰서를 제출한 공급자에게 계약 낙찰 결정을 신속하게 알린다. 조달기관은 서면 또는 공고의 신속한 공표를 통하여 그렇게 할 수 있다. 다만, 그 공고에 낙찰일이 포함되어야 한다. 공급자가 그 정보를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 조달기관은 서면으로 제공한다.
2. 제 11.17 조에 따라, 조달기관은 요청시 낙찰되지 않은 공급자에게 그 조달기관이 그 낙찰되지 않은 공급자의 입찰서를 선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설명 또는 낙찰자의 입찰서의 상대적 이점에 대한 설명을 제공한다.

*기록의 유지*

3. 조달기관은 제 11.10 조제 3 항에 규정된 기록과 보고서를 포함하여, 적용대상조달에 대한 입찰 절차 및 계약의 낙찰과 관련된 서류, 기록과 보고서를 계약 낙찰 후 최소 3년 동안 유지한다.

**제 11.17 조**  
**정보의 공개**

*양 당사국에 대한 정보의 제공*

1.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낙찰에 성공한 입찰서의 특징과 상대적 이점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조달이 공정하고 공평하게 그리고 이 장에 따라 수행되었는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한다. 그 정보의 발표가 향후의 입찰에서 경쟁을 저해하게 될 경우, 그 정보를 접수하는 당사국은 그 정보를 제공한 당사국과 협의하여 합의한 후를 제외하고는, 그 정보를 어떠한 공급자에게도 공개하지 않는다.

## 정보의 비공개

2. 이 장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조달기관을 포함한다)은 법이 요구하는 한도 또는 그 정보를 제공한 공급자의 서면 승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특정한 공급자의 정당한 상업적 이익을 저해하거나 공급자 간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수도 있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3.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비밀정보의 공개가 다음과 같을 경우, 당사국(조달기관, 당국 및 심사기구를 포함한다)에게 그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가. 법 집행을 방해하게 될 경우

나. 공급자 간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 경우

다. 특정한 인의 정당한 상업적 이익(지식재산의 보호를 포함한다)을 저해하게 될 경우, 또는

라. 달리 공공의 이익에 반하게 될 경우

## 제 11.18 조

### 조달 관행의 무결성 보장

각 당사국은 자국의 정부 조달에서 부패를 다루기 위한 형사 또는 행정 조치가 존재하도록 보장한다. 이러한 조치는 그 당사국의 영역에서 정부 조달과 관련하여 사기 또는 그 밖의 불법적인 행위에 관여했다고 그 당사국이 판단한 공급자들에 대하여, 무기한 또는 명시된 기간 동안 당사국 조달에 대한 참가 자격이 없도록 하는 절차를 포함할 수 있다. 각 당사국은 또한 조달에 관여하거나 영향력이 있는 인들의 잠재적인 이해 충돌을 가능한 한도에서 제거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정책 및 절차를 마련하도록 보장한다.

## 제 11.19 조 국내 심의

1. 각 당사국은 공급자가 관심이 있거나 있었던 적용대상조달의 맥락에서 발생하는 다음에 대한 그 공급자의 이의제기나 문제제기(이하 “문제제기”라 한다)를 비차별적이고, 시기적절하며, 투명하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심의할, 조달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최소한 하나의 공평한 행정 또는 사법 당국(이하 “심의 당국”이라 한다)을 유지, 설립 또는 지정한다.

가. 이 장의 위반, 또는

나. 공급자가 당사국의 법에 따라 이 장의 위반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이의 제기할 권리를 갖지 않는 경우, 조달기관의 이 장을 이행하기 위한 그 당사국 조치의 준수 실패

이러한 문제제기를 위한 절차규정은 서면으로 작성되고 일반적으로 이용 가능하게 한다.

2. 공급자가 관심이 있거나 있었던 적용대상조달의 맥락에서 발생하는 제 1 항에 언급된 위반 또는 실패가 있었다는 공급자의 문제제기가 있는 경우, 그 조달을 수행하는 조달기관이 속한 당사국은 조달기관과 공급자가 협의를 통하여 문제제기의 해결책을 모색할 것을 장려한다. 그 조달기관은 그 공급자의 진행 중인 또는 향후의 조달 참가, 또는 행정적 또는 사법적 심의 절차상 시정 조치를 구할 권리를 저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 문제제기를 공평하고 시기적절하게 검토한다. 각 당사국은 자국의 문제제기 메커니즘에 대한 정보를 일반적으로 이용 가능하게 한다.

3. 심의 당국 외의 기구가 문제제기를 최초로 심의하는 경우, 당사국은 공급자가 문제제기의 대상이 되는 조달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심의 당국에 최초 결정을 상소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4. 심의 당국이 제 1 항에 언급된 위반 또는 실패가 있었다고 판정한 경우, 당사국은 입은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한 보상을 입찰 준비 또는 문제제기 중 하나 또는 양자 모두에서 합리적으로 발생한 비용으로 제한할 수 있다.

5. 각 당사국은 심의 당국이 법원이 아닌 경우 심의 절차가 다음 절차에 따라 수행되도록 보장한다.

가. 공급자는 문제제기를 준비하고 서면으로 제출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부여 받으며, 이 시간은 어떠한 경우에도 공급자에게 문제제기의 근거가 알려지거나 합리적으로 알려졌어야 했던 때부터 10 일 이상이다.

나. 조달기관은 공급자의 문제제기에 서면으로 응답하고 심의 당국에 모든 관련 서류를 제공한다.

다. 문제제기를 개시한 공급자에게 심의 당국이 그 문제제기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조달기관의 응답에 답변할 기회가 제공된다. 그리고

라. 심의 당국은 공급자의 문제제기에 대한 결정을 결정의 근거에 대한 설명과 함께 서면으로 시기적절하게 제공한다.

6. 각 당사국은 다음을 규정하는 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가. 문제제기의 해결을 기다리는 동안, 공급자의 조달 참가 기회를 보존하고 그 당사국의 조달기관이 이 장을 이행하는 조치를 준수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신속한 잠정조치, 그리고

나. 제 4 항에 따른 보상을 포함할 수 있는 정정 행위

이러한 절차는, 그러한 조치가 적용되어야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때, 공익을 포함하여 관련 이해에 대한 중대한 부정적인 결과를 고려할 수 있다고 규정할 수 있다. 부작위에 대한 정당한 근거는 서면으로 제공된다.

**제 11.20 조**  
**부속서의 수정 및 정정**

1. 당사국은 공동위원회를 통하여 다른 쪽 당사국에 서면으로 통지를 회람하여 부속서 11-가(정부조달 양허표)의 자국 양허표의 제안된 수정 또는 정정(이하 “수정”이라 한다)을 통보한다. 당사국은 수정 전에 존재한 적용범위에 상응하는 적용범위의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용범위의 변경에 대한 보상 조정을 제공한다. 당사국은 자국의 통지에 보상 조정안을 포함할 수 있다.

2. 당사국은 제안된 수정이 다음 중 하나에 관한 것일 경우, 다른 쪽 당사국에 보상 조정을 제공하도록 요구되지 않는다.

가. 그 당사국이 조달기관에 의한 적용대상조달에 대하여 통제 또는 영향력을 효과적으로 제거한 그 조달기관, 또는

나. 다음과 같은 부속서 11-가(정부조달 양허표)의 자국 양허표에 대한 순전히 형식적인 성격의 정정 및 사소한 수정

가. 조달기관의 명칭 변경

나. 자국 양허표에 열거된 하나 이상의 조달기관의 합병

다. 자국 양허표에 열거된 조달기관이 그 부속서의 동일한 절에 열거된 조달기관에 모두 추가되는 둘 이상의 조달기관으로 분리, 또는

라. 웹사이트 참조 변경

그리고 다른 쪽 당사국은 제안된 수정이 가호 또는 나호에 관한 것이 아님을 근거로 제 3 항에 따라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

3. 당사국이 이 장에 따른 자국의 권리가 제 1 항에 따라 통보된 제안된 수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고 여기는 경우, 그 당사국은 통지 회람일부터 45 일 내에 제안된 수정에 대한 이의사항을 다른 쪽 당사국에 통보한다.

4. 당사국이 조달기관의 적용대상조달에 대한 정부의 통제 또는 영향력이 효과적으로 제거되었음을 근거로 조달기관에 관한 수정을 포함하여 제안된 수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이 장에 따른 그 조달기관의 지속적인 적용범위를 포함하여 제안된 수정을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합의에 이르기 위하여 정부 통제 또는 영향력의 성격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추가적인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수정 당사국과 이의제기 당사국은 협의를 통하여 이의를 해결할 수 있도록 모든 시도를 한다.

5. 공동위원회는 합의된 수정을 반영하기 위하여 부속서 11-가(정부조달 양허표)를 수정한다.

### 제 11.21 조 중소기업의 참여 촉진

1. 양 당사국은 경제성장과 고용에 대한 중소기업의 중요한 기여와 정부조달에 대한 중소기업의 참여 촉진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2. 당사국이 중소기업을 위한 특혜 대우를 제공하는 조치를 유지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적격성 기준을 포함하여 그 조치가 투명하도록 보장한다.

3. 각 당사국은 적용대상조달에 대한 중소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도에서 그리고 적절한 경우

가. 중소기업의 정의를 포함한 조달과 관련된 포괄적인 정보를 단일 전자 포털에서 제공한다.

나. 모든 입찰서류가 무료로 이용 가능하도록 노력한다.

다. 조달을 전자적 수단 또는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을 통해서 수행한다. 그리고

라. 중소기업에 의한 하도급의 이용을 포함하여 조달의 규모, 설계 및 구조를 고려한다.



**제 11.22 조**  
**재정적 의무**

1. 이 장은 양 당사국에 대한 재정적 의무를 수반하지 않는다.
2. 각 당사국은 이 장에 따른 역할을 충족하기 위한 재정 비용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제 11.23 조**  
**언어**

각 당사국은 각 당사국의 조달 시장에 대한 시장 접근을 개선하기 위하여 가능한 경우 부속서 11-가(정부조달 양허표)의 각 당사국의 양허표 제8절에 기재된 공표물을 포함하여 제 11.7조에 따른 자료나 정보의 공표에 영어를 사용한다.